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5-101호 : 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정정·변경)	2
제2015-102호 : 마포로5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14
제2015-103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5
제2015-104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6
제2015-105호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사업예산 고시	17
제2015-106호 :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인가 고시	18
● 공 고	
제2015-864호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
제2015-86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4
제2015-868호 :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분(폐차) 공고	26
제2015-870호 :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30
제2015-87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 공고	3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서울특별시중구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101호

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정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2호(2008.01.31)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중구 고시 제2009-12호 (2009.03.20)로 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4호(2011.06.23)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구 고시 제2014-14호(2014.02.26)로 경미한 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2012-78호(2012.08.08.)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제2014-109호(2014.12.12.)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서울시 중구 신당동 85번지 일대의 신당제1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아래『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항목』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정(변경) 고시 합니다.

2015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변경없음)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시 중구 신당동 85번지 일대 8,224.8㎡(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조합장 김거부
 - 나. 주된 사무소의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90길 36(2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변경없음)
5.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4. 12. 12.(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명세 및 소유권 외의 관리명세 :
【정정(세목고시, 변경)】 후면붙임
7. 주요 사업 현황(변경없음)
 - 가. 건립세대 : 176세대

주택	공 급 구 분	주택의 형 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85이하	60이하
	분 양	공동주택(아파트)	3	176	75	101

나. 건축계획(주택의 규모 및 주택건설계획 포함)

구 분	대지면적 (㎡)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높이 (m)	층 수	전용면적별 주택건설계획			비 고
							구분	전용면적 (㎡)	세대수	
택지	6,577.0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5.42	244.01	46.4	지상16층/ 지하3층	49	45.58	9	분양
							59A	59.91	26	
							59B	59.44	40	
							72A	72.61	26	
							72B	72.68	47	
							72C	72.94	12	
							84	84.67	16	
							계	11,880.21	176	

8. 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무상귀속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

종류	명칭	위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	규모(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			시행내 용의범 위	저촉 토지 등의 내역				비용부담			비 고
			면적 (㎡)	폭원 (m)	연장 (m)		토지(㎡)		건축물(㎡)		부담자	부담 내용	부담액	
							필지	면적	동수	연면적				
총 계							47	1,647.8	13	889				
도로 합계							15	929.8	5	501	조합	설치후 무상귀속	전부	
도로	소로 2-B	신당동 85-240 ~ 신당동 85-478	929.8	6~10	102	전부	15	929.8	5	501	조합	설치후 무상귀속	전부	
소공원 합계							28	354	5	222				
공원	소공원1	중구 신당동 85-549일원	277	-	-	전부	23	277	3	80	조합	설치후 무상귀속	전부	
공원	소공원2	중구 신당동 85-288일원	77	-	-	전부	5	77	2	142	조합	설치후 무상귀속	전부	
근린공원 합계							4	364	3	166				
공원	근린공원	중구 신당동 845-3	364	-	-	전부	4	364	3	166	조합	설치후 무상귀속	전부	

나. 무상양여 (용도 폐지되는 시설)

종류	명칭	위치 (도로의 경우 시·종점)			규모(면적 또는 폭원 및 연장)			저촉 국.공유지			무상양여
					면적 (㎡)	폭원 (m)	연장 (m)	구역편입(㎡)	정비기반 시설편입(㎡)	실제이용 (㎡)	
도로	소로 3-A	신당5동 85-551 ~ 신당5동 85-537			202	6	41	202	202	202	195

9. 관련도서 :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 (☎02-3396-5723) 및 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2-2237-4881)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변경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조합 번호)	
			지목	면적(㎡)			이용 상황	용도 지구 2종	소 유 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	소 유 자		권리의 종 류	권 리 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용	1	85-6	대	89.00	89.00	89.00		일반 미관	오경숙	중구 신당동 151-7 (4층)	주택	세멘브럭조	1	2	97.06	오경숙	중구 신당동 151-7 (4층)				1
수용	2	85-6 (무허가)									주택	세멘벽돌	1	2	20.91	박시은	중구 신당동 447 대동금숙				81
수용	3	85-9	대	53.00	53.00	53.00	도로 지축		김춘식	중구 신당동 85-9	주택	연와조	1	2	79.96	김춘식	중구 신당동 85-9	가압류	금호산업주식 회사	전남 나주시 시청길 4 (송월동)	2
수용	4	산2-4 (무허가)									주택	벽돌조	1	2	85.95	함수복	중구 신당동 산 2-47				77
수용	5	85-10외1 845-3									주택	세멘벽돌조	1	2	32.12	김진영	중구 신당동 산2-47				52
수용	6	85-10외1 산60									주택	세멘벽돌조	1	1	60.83	이정숙	왕평군 양서면 북포리 218-7				4
수용	7	85-10	대	413㎡ (2-2)	79.00	79.00			최종우	서초구 방배2동 426-7	주택	세멘브럭조	1	1	38.52	최종우	서초구 방배2동 426-7				3
수용	8	85-10(1)									주택	연와조	1	2	73.06	홍길자	중구 신당동 85-10	압류 압류	중구청 중구청	중구청 세무1과 중구청 주택과	5
수용	9	85-10(2)									주택	세멘브럭조	1	1	36.78	김재연	서울시 성동구 무학봉길76. 102동402호 (하왕십리동,하왕십리지월)				6
수용	10	85-10(3)									주택	브럭조	1	2	49.10	이경애	중구 남계로 10길26(신당동)	근저당	홍성길	노원상계동670 주공917-403	7
수용	11	85-18	대	24㎡ (2-1)	6.00	6.00		일반 미관	정희남	중구 신당동 85-518											66
수용	12	85-27	대	13.00	13.00	13.00		일반 미관	정희남	중구 신당동 85-518											66
수용	13	85-238	대	7.00	7.00	7.00			정재웅	종로구 창신길 140-14, 104동 202호							공담 (85-522)				68
수용	14	85-241	대	699㎡ (14-1)	35.35	35.35	도로 지축	일반 미관	정길호	중구 신당동 12-19	주택	세멘벽돌조	1	1	47.06	정길호	중구 신당동 12-19				8
수용	15	85-241	대	699㎡ (14-2)	28.89	28.89	도로 지축	일반 미관	김순일	중구 신당동 85-3	주택	연와조	1	3	162.32	김순일	중구 신당동 85-3				9
수용	16	85-241	대	699㎡ (14-3)	10.64	10.64	도로 지축	일반 미관	김월임	중구 신당동 산2-10	주택	세멘벽돌조	1	2	73.69	김월임	중구 신당동 산2-10				10
수용	17	85-241	대	699㎡ (14-4)	12.16	12.16	도로 지축	일반 미관	박동준	중구 신당동 85-241	주택	연와조	1	2	51.64	박동준	중구 신당동 85-241				11
수용	18	85-241	대	699㎡ (14-5)	19.38	19.38	도로 지축	일반 미관	오세홍	중구 신당동 85-241	주택	세멘벽돌조	1	2	111.20	오세홍	중구 신당동 85-241				12
수용	19	85-241	대	699㎡ (14-6)	33.07	33.07	도로 지축	일반 미관	이혜원	영등포구 선유로13길 11, 201동 1105호	주택	연와조	1	3	244.07	이혜원	영등포구 선유로13길 11, 201동 1105호				13
수용	20	85-241	대	699㎡ (14-7)	10.26	10.26	도로 지축	일반 미관	김중호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90, 105동1501호(하월곡동,삼 성레이안월곡아파트)	주택	세멘벽돌조	1	2	44.47	김중호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90, 105동1501호(하월곡동,삼성레이안월 곡아파트)				14
수용	21	85-241	대	699㎡ (14-9)	12.16	12.16	도로 지축	일반 미관	임빈화	중구 신당동 85-241	주택	브럭조	1	1	30.38	임빈화	중구 신당동 85-241	근저당	기업은행	중구을지로2가50 성동지점	15
수용	22	85-241	대	699㎡ (14-10)	26.99	26.99	도로 지축	일반 미관	정위윤	성북구 동선동4가 4 (3층)											91
수용	23	85-241	대	699㎡ (14-11)	16.34	16.34	도로 지축	일반 미관	김영수	강동구 성내3동 443-26 5층 501호	주택	브럭조	1	1	39.27	김영수	강동구 성내3동 443-26 5층 501호				17
수용	24	85-241	대	699㎡ (14-12)	6.46	6.46	도로 지축	일반 미관	한두영	마포구 서교동 330-11											83
수용	25	85-241	대	699㎡ (14-13)	75.01	75.01	도로 지축	일반 미관	신영순	중구 신당동 삼성아파트 103-1704	주택	연와조	1	2	136.21	신영순	중구 신당동 삼성아파트 103-1704				18
수용	26	85-241	대	699㎡ (14-14)	6.08	6.08	도로 지축	일반 미관	황미애	동대문구 청계천로 417, 1904호	주택	연와조	1	3	34.02	황미애	동대문구 청계천로 417, 1904호				19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조합 번호)		
			지목	면적(㎡)			이용 상황	용도 지구 2종	소 유 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	소 유 자		권리의 종 류		권 리 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용	27	85-241외1 85-7								주택	세멘벽돌조	1	1	37.77	조창여	중구 신당동 85-241				20	
수용	28	85-241(10)								주택	적연와	1	1	44.80	한지환	중구 신당동 85-241				21	
수용	29	85-241(5)								주택	브럭조	1	1	55.61	박경록	서대문구 서소문로 43-8, 101동 903호				22	
수용	30	85-241(11)								주택	브럭조	1	1	20.14	이순자	성동구 성수동2가 269-80				23	
수용	31	85-241(12)								주택	세멘브럭조	1	1	31.95	전홍근	성동구 하왕십리2동 969-9				24	
수용	32	85-241(13)								주택	연와조	1	2	54.01	김연아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산 71	근저당 임차권	정수현 구종학	강동잠실동19 중구신당동85-241	25	
수용	33	85-241(4)								주택	세멘벽돌조	1	2	48.06	송옥분	중구 신당동 산 2				26	
수용	34	85-241(16)								주택	세멘 세멘벽돌조	1	1	45.70	백은영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5. 216동 1103호(신천동,파크리오)				27	
수용	35	85-241(6)								주택	브럭조	1	1	22.05	박영섭	중구 신당동 산 2				28	
수용	36	85-241(15)								주택	브럭조	1	1	40.00	양태식	중구 신당동 162-21				29	
수용	37	85-241(8)								주택	브럭조	1	1	16.74	양영미 신동호	중구 신당동 삼성힐타운 101-202				30	
수용	38	85-241								주택	브럭조	1	1	13.16	이흥우	중구 신당동 85-323				76	
수용	39	85-242	대	59㎡ (4-2)	5.65	5.65	도로 저속	일반 미관	유영기	중구 신당동 162-21							가동기 가압류	임혜경 금호산업주식 회사	파주시 상지석길 318-66 전남 나주시 시정길 4	72	
수용	40	85-247	대	458㎡ (6-2)	11.76	11.76	도로 접합	일반 미관	정위원	중구 신당동 85-667										91	
수용	41	85-247	대	458㎡ (6-3)	60.95	60.95	도로 접합	일반 미관	이창열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장미아파트 A-302	주택	세멘벽돌조	1	1	37.29	이창열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장미아파트 A-302				32
수용	42	85-247	대	458㎡ (6-4)	9.00	9.00	도로 접합	일반 미관	신영순	중구 신당동 삼성아파트 103-1704										18	
수용	43	85-247	대	458㎡ (6-5)	44.09	44.09	도로 접합	일반 미관	김상욱	인천시 서구 가정3동 546 한신빌 21-306										33	
수용	44	85-247	대	458㎡ (6-6)	44.09	44.09	도로 접합	일반 미관	김용식 1	서초구 잠원동 65-32 신반포7차A 302-1005										33	
수용	45	85-247외1 85-260(2)									주택	연와조	1	2	71.56	장점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 39, A동203호				34
수용	46	85-260	대	351㎡ (5-2)	46.00	46.00		일반 미관	조희구	중구 신당동 85-6	주택	연와조	1	2	162.84	조희구	중구 신당동 85-6	근저당 임차권	국가보훈처 이상수	국가보훈처 중구신당5동85-6	35
수용	47	85-260	대	351㎡ (5-3)	40.00	40.00		일반 미관	전의복	중구 신당동 85-260	주택	연와조 브럭조	1	3	82.77	전의복	중구 신당동 85-260				36
수용	48	85-260외1 85-505	대	351㎡ (5-4)	69.00	69.00		일반 미관	백행자	중구 신당동 85-260	주택	연와조 세멘벽돌	1	3	123.73	백행자	중구 신당동 85-260				37
수용	49	85-260	대	351㎡ (5-5)	31.00	31.00		일반 미관	임경중	광명시 철산동 245 쌍마한신A 103-601	주택	세멘벽돌	1	2	72.12	임경중	광명시 철산동 245 쌍마한신A 103-601				38
수용	50	85-260외1 85-247(1)									주택	목조	1	1	24.50	문충일	영등포구 도신로15가길 10, 401호(도림동)				39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조합 번호)		
			지목	면적(㎡)			이용 상황	용도 지구 2종	소 유 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	소 유 자		권리의 종 류		권 리 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용	51	85-264	대	63㎡ (2-2)	40.00	40.00		일반 미관	김사임	중구 신당동 85-264	주택	연와조 세멘벽돌	1	3	130.00	김사임	중구 신당동 85-264	압류	중구주택과	서울시 중구청	40
수용	52	85-265	대	7.00	7.00	7.00		일반 미관	정희남	중구 신당동 85-518											66
수용	53	85-267	대	73.00	73.00	73.00			김태봉	군포시 당동 10블록 1롯데 무지개마을A 104-203	주택	목조	1	1	34.00	김태봉	군포시 당동 10블록1롯데 무지개마을A 104-203				41
수용	54	85-268	대	43㎡ (2-2)	38.00	38.00			김계화	성동구 마장동 829 태성아파트 303호	주택	적벽돌	1	2	68.90	김계화	성동구 마장동 829 태성아파트 303호				42
수용	55	85-269	대	17㎡ (2-2)	15.00	15.00			김계화	성동구 마장동 829 태성아파트 303호											42
수용	56	85-280									주택	연와조	1	2	104.83	정윤미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삼 리 589-5 금정A 101-601				43
수용	57	85-284	대	46.00	46.00	46.00			박종운	중구 신당동 85-241											44
수용	58	85-284외2 85-239,28 5									주택	브릭조	1	1	31.09	오인석	중구 신당동 85-241				45
수용	59	85-288	대	872㎡ (7-2)	44.00	44.00	도로 지축		서승현	중구 신당동 85-296											92
수용	60	85-288	대	872㎡ (7-3)	93.00	93.00	도로 지축		장덕환	중구 신당동 85-288	주택	연와조	1	3	104.24	장덕환	중구 신당동 85-288	가압류	금호산업주식 회사	전남 나주시 시청길 4 (송월동)	47
수용	61	85-288	대	872㎡ (7-4)	52.00	52.00	도로 지축		유은경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137, 211동 603호 (상왕십리, 텐즈빌)	주택	연와조	1	1	35.96	유은경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137. 211동603호(상왕십리. 텐즈빌)				48
수용	62	85-288	대	872㎡ (7-5)	5.00	5.00	도로 지축		한두영	마포구 서교동 330-11											83
수용	63	85-288	대	872㎡ (7-6)	9.00	9.00	도로 지축		김화자	중구 신당동 85-332	주택	세멘벽돌	1	1	45.34	김화자	중구 신당동 85-332	근저당	신당5동 새마을	중구신당동144-2	49
수용	64	85-288	대	872㎡ (7-7)	32.00	32.00	도로 지축		권지윤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17 건영리버A 107-703	주택	연와조	1	2	38.70	권지윤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17 건영리버A 107-703				50
수용	65	85-288(1)									주택	연와조	1	2	37.59	강문정	구로구 구로동 1257 럭키A 2-1514				51
수용	66	85-288									주택	적벽돌	1	2	31.00	염유신	성동구 성수동1가 705 우방A 1-1103				53
수용	67	85-294	대	43.00	43.00	43.00			박지혜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744 한국A 101-1704	주택	벽돌조	1	2	66.93	박지혜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744 한국A 101-1704				84
수용	68	85-295	대	146㎡	146.00	146.00			김거부 최재순	중구 신당동 85-295	주택	벽돌조	1	2	204.80	김거부 최재순	중구 신당동 85-295	가등기 가압류	최재순 (매매예약) 금호산업주식 회사	중구신당동85-295 전남 나주시 시청길 4	85
수용	69	85-296	대	123.00	123.00	123.00			서춘식	중구 신당동 85-296	주택	벽돌조	1	3	270.43	서춘식	중구 신당동 85-296	가등기	권욱자 (매매예약)	중구신당동85-296	46
수용	70	85-298	대	76.00	76.00	76.00	도로 지축		유근환	중구 신당동 85-298	주택 점포	적벽돌조	1	4	151.67	유근환	중구 신당동 85-298				78
수용	71	85-298									주택 점포	세멘벽돌조	1	2	165.59	서정욱	중구 신당동 85-298				86
수용	72	산2-37 (무허가)									주택	철근조	1		132.23	정태문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063 동보빌라 202				89
수용	73	85-300	대	46㎡ (2-2)	29.57	29.57	도로 지축		김영민	동대문구 회기동 16-1											80
수용	74	85-303									주택	연와조	1	2	57.09*1/2	김미숙	부산 수영구 남천동 51-12				79
											주택	연와조	1	2	57.09*1/2	최선희	중구 신당동 85-308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조합 번호)			
			지목	면적(㎡)			이용 상황	용도 지구 2종	소 유 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	소 유 자			권리의 종류	권 리 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용	75	85-304	대	23.00	23.00	23.00			홍길자	중구 신당동 85-10							압류 압류 압류 압류 압류	성동구청 중구청 서울검찰청 중구청 성동구청	성동구청 세무과 중구청 세무1과 서울중앙지법검찰청 중구청 주먹과 중구청 교통지도과	5	
수용	76	85-308	대	63.00	63.00	63*(59.6975/63)	도로 지축		김용식 2	중구 신당동 85-308	주택	벽돌조	1	3	156.72	김용식2	중구 신당동 85-308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근저당	김용기 임순자 농협주식회사 중구청 신당5새마을	광진구 자양동 779-8 중구 황학동 1960, 202호 중구통일로120층정로1가 중구청 세무과 중구신당동144-2	54
			대	63.00	63.00	63*(3.3025/63)	도로 지축		안필순	중구 신당동 85-308									김만길 교보생명	관악신림난곡로136-1 종로구 종로1가	
수용	77	85-319	대	81.00	81.00	81.00			백민석	중구 신당동 12-2	주택	연와조	1	3	205.48*(172.65/205.48)	백민석	중구 신당동 12-2				55
											주택	연와조	1	3	205.48*(32.83/205.48)	한진아	경기도 덕양구 백양로 71,101-707 (화정동,삼라마이다스빌)	압류	중구청	중구청 세무과	
수용	78	85-320	대	53.00	53.00	53.00			이명우	중구 신당동 85-320	주택	연와조 세멘벽돌조	1	3	138.79	이명우	중구 신당동 85-320				56
수용	79	85-322	대	79.00	79.00	79.00			성영수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69-19 태고(A) C-108	주택 근생	연와조	1	3	96.21	성영수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69-19 태고(A) C-108				57
수용	80	85-326	대	126.00	126.00	126.00			한원배	중구 신당동 85-326	주택	적연와조	1	2	138.33	한원배	중구 신당동 85-326	가압류	금호산업주식회사	전남 나주시 시청길 4 (송월동)	58
수용	81	85-332	대	79㎡ (2-2)	54.00	54.00			김화자	중구 신당동 85-332									(공당) 85-288		49
수용	82	85-336	대	56㎡ (2-2)	43.00	43.00			한두영	마포구 서교동 330-11											83
수용	83	85-337	대	76.00	76.00	76.00			송춘자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232											59
수용	84	85-451	대	44.00	44.00	44.00	도로 지축		임채영	중구 신당동 85-451	주택	세멘벽돌	1	1	63.31	임채영	중구 신당동 85-451				60
수용	85	85-452	대	7.00	7.00	7.00	도로		임채영	중구 신당동 85-451											60
수용	86	85-479	대	36㎡ (6-1~4)	18.00	18.00	도로 지축		박정화 외3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136-9 쌍용빌라 나-301											61
수용	87	85-479	대	36㎡ (6-5)	10.00	10.00	도로 지축		이혜원	영등포구 선유로13길 11, 201동 1105호											13
수용	88	85-479	대	36㎡ (6-6)	8.00	8.00	도로 지축		신영순	중구 신당동 삼성아파트 103-1704											18
수용	89	85-512	대	33.00	33.00	33.00			천미정	양천구 목동 힐타운 아파트 가-701	주택	세멘벽돌	1	1	27.03	천미정	양천구 목동 힐타운 아파트 가-701				62
수용	90	85-514	대	66.00	66.00	66.00			안홍구	송파구 잠전동 178-6 (401호)	주택	목조	1	1	25.69	안홍구	송파구 잠전동 178-6 (401호)				63
수용	91	85-515	대	26㎡	26.00	26.00			한명숙 외2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0 호수공원APT 109-302	주택	연와조	1	2	67.00	한명숙 외2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0 호수공원APT 109-302				64
수용	92	85-516	대	17㎡	17.00	17.00			유영기	중구 신당동 162-21								가등기 가압류	임해경 금호산업주식회사	파주시 상지석길 318-66 전남 나주시 시청길 4	72
수용	93	85-518	대	26.00	26.00	26.00		일반 미관	정희남	중구 신당동 85-518	주택	연와조	1	3	107.99	정희남	중구 신당동 85-518				66
수용	94	85-520	대	50㎡	50.00	50.00		일반 미관	김보련	중구 황학동 1548											65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조합 번호)				
			지목	면적(㎡)			이용 상황	용도 지구 2종	소 유 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	소 유 자			권리의 종 류	권 리 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수용	95	85-521	대	86.00	86.00	86.00		일반 미관	안홍석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25-9 4층호	주택	연와조	1	2	121.96	안홍석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25-9 4층호				67	
수용	96	85-522	대	69.00	69.00	69.00			정재웅	종로구 창신길 140-14, 104동 202호	주택	세멘브럭조	1	1	35.27	정재웅	종로구 창신길 140-14, 104동 202호	근저당	주식회사우리은행	중구 소공로51 (회현동1가)	68	
수용	97	85-523	대	56.00	56.00	56.00			윤희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16 우성A 305-802	주택	세멘브룩	1	1	32.30	윤희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16 우성A 305-802	근저당	우리은행	중구회현동1가203 (삼성동지점)	69	
수용	98	85-524	대	13.00	13.00	13.00			문필모	동작구 상도동 415 중앙하이츠빌A 109-603	주택	세멘벽돌	1	1	31.68	문필모	동작구 상도동 415 중앙하이츠빌A 109-603	압류	중구청	중구청 세무과	70	
수용	99	85-525	대	23.00	23.00	23.00			서영옥	중구 신당동 85-525	주택	세멘벽돌	1	1	22.95	서영옥	중구 신당동 85-525				71	
수용	100	85-536	대	15.00	15.00	15.00	도 점 합	일반 미관	유영기	중구 신당동 162-21							가등기 가압류	임혜경 금호산업주식 회사	파주시 상지석길 318-66 전남 나주시 시청길 4		72	
수용	101	85-547 101호집합	대	33㎡ (2-1)	16.50	16.50			김미리	중구 신당동 166-66	주택	연와조 브럭조	0.5	2	26.86	김미리	중구 신당동 166-66					73
수용	102	85-547 201호집합	대	33㎡ (2-2)	16.50	16.50			김희정	중구 신당동 166-66	주택	연와조 브럭조	0.5	2	15.58	김희정	중구 신당동 166-66					90
수용	103	85-548	대	60.00	60.00	60.00		일반 미관	유영기	중구 신당동 162-21							가등기 가압류	임혜경 금호산업주식 회사	파주시 상지석길 318-66 전남 나주시 시청길 4		72	
수용	104	85-667	대	79 ㎡ (2-1)	39.50	39.50			박경선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청학주공A 701-1104											87	
수용	105	85-667	대	79 ㎡ (2-2)	39.50	39.50			최창학	고양시 일산구 풍동 1127-1 쌍용A 105-1102											87	
수용	106	85-667									주택	연와조	1	3	140.01	정경자	중구 난계로10길 9-6	임차권 가처분	이우찬,최선묵 남상선	중구신당동85-667 의정부회룡로117번 길67-19		88
수용	107	85-668	대	71㎡ (13-1)	3.59	3.59			정갈호	중구 신당동 12-19												8
수용	108	85-668	대	71㎡ (13-2)	2.93	2.93			김순일	중구 신당동 85-3												9
수용	109	85-668	대	71㎡ (13-3)	1.08	1.08			김활임	중구 신당동 산 2-10												10
수용	110	85-668	대	71㎡ (13-4)	1.24	1.24			박동준	중구 신당동 85-241												11
수용	111	85-668	대	71㎡ (13-5)	1.97	1.97			오세홍	중구 신당동 85-241												12
수용	112	85-668	대	71㎡ (13-6)	3.36	3.36			이혜원	영등포구 선유로13길 11, 201동 1105호												13
수용	113	85-668	대	71㎡ (13-7)	1.04	1.04			김종호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90, 105동1501호(하월곡동,삼성래미안월곡아파트)											14	
수용	114	85-668	대	71㎡ (13-9)	1.24	1.24			임빈화	중구 신당동 85-241												15
수용	115	85-668	대	71㎡ (13-10)	2.74	2.74			정위원	성북구 동선동4가 4 (3층)												91
수용	116	85-668	대	71㎡ (13-11)	1.66	1.66			김영수	강동구 성내3동 438-26 5층 501호												17
수용	117	85-668	대	71㎡ (13-12)	0.66	0.66			한두영	마포구 서교동 330-11												83
수용	118	85-668	대	71㎡ (13-13)	0.62	0.62			황미애	동대문구 청계천로 417, 1904호												19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조합 번호)
			지목	면적(㎡)			이용 상황	용 도 지 구 2 종	소 유 자		용도 / 구조		동수 / 층수	연면적 (㎡)	소 유 자		권리의 종 류	권 리 자		
				공부상	편입	소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사용	213	85-670	도	38㎡ (13-8)	26.16	26.16			재무부											
사용	214	85-671	대	20㎡ (3-1)	15.64	15.64			재무부											
사용	215	85-672	도	74㎡ (3-1)	57.85	57.85			재무부											
사용	216	85-673	대	84㎡ (3-1)	65.67	65.67			재무부											
사용	217	85-690	대	1.00	1.00	1.00	도로 접합	일반 미관	서울특 별시											
사용	218	85-701	대	17㎡ (3-1)	13.29	13.29	도로 접합	일반 미관	재무부											
사용	219	85-701	대	17㎡ (3-3)	3.27	3.27	도로 접합	일반 미관	서울특 별시											
사용	220	85-768	대	37.00	37.00	37.00	도로	일반 미관	서울특 별시											
사용	221	85-769	대	1.00	1.00	1.00	도로 접합	일반 미관	서울특 별시											
사용	222	85-770	대	17.00	17.00	17.00	도로	일반 미관	서울특 별시											
사용	223	85-771	대	32.00	32.00	32.00	도로	일반 미관	서울특 별시											
사용	224	85-772	대	2.00	2.00	2.00	도로	일반 미관	서울특 별시							근저당	신당5동 새마을	중구신당동144-2		
사용	225	85-773	대	28.00	28.00	28.00	도로	일반 미관	서울특 별시											
사용	226	85-774	대	33.00	33.00	33.00	도로	일반 미관	서울특 별시											
사용	227	85-775	대	15.00	15.00	15.00	도로 접합	일반 미관	서울특 별시											
사용	228	85-776	대	24.00	24.00	24.00	도로	일반 미관	서울특 별시											
사용	229	85-777	대	3.00	3.00	3.00	도로 접합	일반 미관	서울특 별시											
사용	230	85-778	대	12.00	12.00	12.00	도로	일반 미관	서울특 별시											
사용	231	85-779	대	10.00	10.00	10.00	도로	일반 미관	서울시 중구											
사용	232	170-51	도로	103.80	103.80	103.80	도로	3층 일주	서울특 별시 (등기 부)											
사용	233	548-4	공원	174.50	174.50	174.50	공원 접합		서울특 별시											
사용	234	848-3	공원	6.50	6.50	6.50	공원	1층 일주	서울특 별시											
계				7779.69	4633.39	4633.39						-		-						
합 계				11371.10	8224.80	8224.80						77		5928.35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102호

마포로5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86-1번지 일대 마포로5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수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포로5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사항

가. 추진위원회 명칭 : 마포로5-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86-1번지 일대

다. 정비구역의 면적 : 8,646.3㎡

라. 추진위원회 승인일 : 2009. 10. 29.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 2015. 12. 16.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취소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수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4.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 - 10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86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66-39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86	2010.04.19.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호 인용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7-12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4길 41	2010.06.28.	소파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1~5)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2.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 - 104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6길 30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6길 30	2015.12.10.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2.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105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사업예산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사업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15.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16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5년	증 감	증감률
계		388,023,799	335,692,439	52,331,360	15.59%
일반회계		334,727,446	288,092,866	46,634,580	16.19%
특별회계		53,296,353	47,599,573	5,696,780	11.97%
	의료급여	179,118	225,301	△46,183	△20.50%
	주민소득지원	1,173,656	1,173,656	0	0.00%
	주차장	51,116,579	46,179,061	4,937,518	10.69%
	기반시설	827,000	21,555	805,445	3736.70%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2015-106호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17호(1983.09.30)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4호(2011.12.29)로 변경 지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3-66호(2013.7.17)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2015-82호(2015.10.14.)로 도시환경정비구역(경미한)변경 결정된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8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48번지 일대

다. 정비사업의 시행면적 : 4,139.2㎡(대지 2,991.5㎡, 정비기반시설 1,147.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성명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이사 이창희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신한빌딩 12층

마.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2013.07.15~2017.07.14

바. 사업시행 변경인가일 : 2015.12.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1

아.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층)	높이 (m)	용 도	비고
기 정	2,959.2	1,757.27	52,928.89	59.38	1,198.07	지상25/ 지하7	119.9	업무시설 (금융)	
변 경	2,991.5	1,775.33	53,327.82	59.35	1,199.47	지상26/ 지하7	119.9	업무시설 (금융)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별첨2

차. 관련도서 : 생략(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비치도서와 같음)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추가)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		이용 상황	용도지역	소유자		용도/ 구조	동수/ 층수	연면 적	소유자		권리 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저동1가 90-11	대	35.7	30.2	대지	중심상업지역	(국)재무부										

#별첨2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추가)

종류	시설 별	토지건축물 소재지	토지내역							건축물					총평가액	처분 방법	비고
			지목	이용 상황	면적(㎡)		소유자		평가액	용도	연면 적	소유자		평가액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공원		저동1가 90-11	대	대지	35.7	30.2	국(재무부)		646,280,000						646,280,000		
계						30.2			646,280,000						646,280,000		

공 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864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충무아트홀 개관 10주년을 맞아 뮤지컬 전문 공연장 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제1조~제6조, 제8조~제10조, 제13조~제14조, 제18조 개정

- 개관 10주년을 맞아 뮤지컬 전문 공연장 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충무아트홀의 명칭을 “충무아트센터”로 각각 변경하고자 함

나. 제3조(위치) 개정

-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으로 충무아트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다. 제17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개정

-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제5조에 공연장 할인 규정이 있어 할인과 관련된 내용을 입장료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라. 제6조, 제9조, 제12조, 제22조 개정

- 조례의 규정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용어를 각각 정비하고자 함

마. 별표 제목을 “충무아트센터”로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1월 0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문화관광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전화: 02-3396-4603, FAX 02-3396-8621, kimjhny@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실 분은 중구청 문화관광과
(02-3396-460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충무아트홀”을 “충무아트센터”로 하고, 제3조부터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4조, 제18조 중 “아트홀”을 각각 “아트센터”로 한다.

제3조 중 “흥인동 131번지”를 “퇴계로 387”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허가를 얻어야”를 “허가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허가를 얻어야”를 “사전허가를 받아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식에 의하여”를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할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제3조에 해당되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2조 본문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제목 “충무아트홀”을 “충무아트센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3호 중 “충무아트홀”을 “충무아트센터”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제1호 중 “충무아트홀”을 “충무아트센터”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충무아트홀”을 “충무아트센터”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를 “충무스포츠센터”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충무아트홀”을 “충무아트센터”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867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종량제 수수료를 청소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하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의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제15조), 예산총계주의(제34조)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2.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구세입처리 (안 제9조의1 신설)
 - 종량제 수수료를 대행업체 수입으로 하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료는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으로 한다.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청소행정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5463, FAX:3396-8750, 메일:kch04090@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세입처리 등)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9조의1(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세입처리 등)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으로 한다.</u>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868 호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폐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고기간 : 2015년 12월 17일 ~ 2015년 1월 15일(30일간)

2. 보관장소 : (주)중앙RDC (☎:02-992-4884, FAX:02-992-4806)

- 본 사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1013

- 서울영업소 :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63길 109

3.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16년 1월 16일 이후**

4. 강제처리 대상차량 : 전남70노2462 외 36대(이륜차량포함), 붙임참조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점유자)는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 할 때에는 **범칙금 20~3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처리(폐차) 후 불이행에 대해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일체 지지 않습니다.

라. 이해관계인(압류권자 등)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저당권자는 공고(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공시송달 공고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구청 교통행정과(☎02)3396-6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폐차)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차리(폐차) 대상 자동차(이륜차) 내역(2015.12.16.)

연 번	관리 번호	차 량 번 호 (차명/차대)	소 유 자		방 치 장 소	이해관계인 및 내역 (압류 및 저당)
			성 명 (차명)	사용본거지		
1	2015- 사륜42	전남70노2462 (그레이스터보15인승)	(주)고*	전라남도 보성군 별교읍 농공단지길 57	중구 다산로 32 남신타운아파트 117동 주차장내	□단독저당- 현대캐피탈(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체납보험료 □보성경찰서-속도위반 과태료 □보성군청-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김해시청-주차위반 □부산시남구청-주차위반 과태료 □해운대구청-주차위반과태료 □부산시금정구청-주차위반과태료 □부산광역시청-버스전용차로위반 □서울 종로구청-주정차위반과태료 □서울 중구청-주정차위반과태료 □서울 중랑구청-주정차위반과태료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통행료 미납채납
2	2015- 이륜148	서울중다9900 VT125F1008533	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송인로 39	다산로29길 5-1	“해당내역없음”
3	2015- 미상269	SA10J-113034	미상	미상	을지로45길62 라모도GS시	“해당내역없음”
4	2015- 미상272	KMYO5H10D5C050358	DEIFINO	미상	퇴계로75길23 (충무아트홀)	“해당내역없음”
5	2015- 미상273	GZ50G1061743	MESSAGE	미상	퇴계로75길23 (충무아트홀)	“해당내역없음”
6	2015- 미상274	KMYSA2ADS3CO30358	FORTE	미상	난계로159	“해당내역없음”
7	2015- 미상275	KMYVF125HX***4343*	미상	미상	중앙시장	“해당내역없음”
8	2015- 미상276	KM4CE138B7Y1109099	VETERAN	미상	다산로269	“해당내역없음”
9	2015- 미상279	KMYSE7ADSBC326467	YAMAHA	미상	광희지구대내	“해당내역없음”

연 번	관 리 번 호	차 량 번 호 (차명/차대)	소 유 자		방 치 장 소	이해관계인 및 내역 (압류 및 저당)
			성 명 (차명)	사용본 거지		
10	2015- 미상280	GE**E-*076706	Message	미상	황학동2529-1	“해당내역없음”
11	2015- 미상282	*LEFSACNDSC1004059*	삼발이	미상	황학동2529-1	“해당내역없음”
12	2015- 미상286	KMYSE4ADS9C028395	삼발이	미상	동대문 라모도	“해당내역없음”
13	2015- 미상287	KM4CA14A7X1103354	Racing	미상	동대문 라모도	“해당내역없음”
14	2015- 미상289	*****48118*****	미 상	미상	퇴계로63길10	“해당내역없음”
15	2015- 미상291	YSA2ADS3CO27709	FORTE	미상	청평화시장 게이트9	“해당내역없음”
16	2015- 미상292	LAWTAB5087B227259	VENUS2	미상	을지로45길46	“해당내역없음”
17	2015- 미상294	CT100GE171657	CITY PLUS	미상	동호로7길137	“해당내역없음”
18	2015- 미상295	*RFCBK8DKE8Y105632*	미상	미상	동호로7길137	“해당내역없음”
19	2015- 미상299	*LE8SA5NDS91215595*	미상	미상	동호로25길 3	“해당내역없음”
20	2015- 미상303	KM4CA14A7X1102207	미상	미상	동호로11길101	“해당내역없음”
21	2015- 미상304	KMYOGZ50G4C13828	대림 메세지	미상	남산타운아파트 지하주차장내	“해당내역없음”
22	2015- 미상305	알수없음	미상	미상	남산타운아파트 지하주차장내	“해당내역없음”
23	2015- 미상306	AF58-1706977	혼다	미상	남산타운아파트 지하주차장내	“해당내역없음”

연 번	관 리 번 호	차 량 번 호 (차명/차대)	소 유 자		방 치 장 소	이해관계인 및 내역 (압류 및 저당)
			성 명 (차명)	사용본 거지		
24	2015- 미상308	알수없음	미상	미상	남산타운아파트 지하주차장내	“해당내역없음”
25	2015- 미상309	*LEYTCJS9981007579*	GENDER 125	미상	남산타운아파트 지하주차장내	“해당내역없음”
26	2015- 미상311	GZ50G510126	미상	미상	남산타운아파트 지하주차장내	“해당내역없음”
27	2015- 미상312	KMYSE3ADS2COO4718	미상	미상	남산타운아파트 지하주차장내	“해당내역없음”
28	2015- 미상313	VF125E1227921	미상	미상	남산타운아파트 지하주차장내	“해당내역없음”
29	2015- 미상314	KM4CA14B711101035	RACING	미상	남산타운아파트 지하주차장내	“해당내역없음”
30	2015- 미상315	14310HF163	RACING	미상	남산타운아파트 지하주차장내	“해당내역없음”
31	2015- 미상316	LAWTAB5001A149881	비너스	미상	남산타운아파트 지하주차장내	“해당내역없음”
32	2015- 미상317	KMYOSH1003CO39890	대림	미상	남산타운아파트 지하주차장내	“해당내역없음”
33	2015- 미상318	GZ50-F1068601	대림텍트	미상	남산타운아파트 지하주차장내	“해당내역없음”
34	2015- 미상318-1	KM40A14A7X1118253	미상	미상	남산타운아파트 지하주차장내	“해당내역없음”
35	2015- 미상319	GZ50F-1111526	대림텍트	미상	남산타운아파트 지하주차장내	“해당내역없음”
36	2015- 미상320	KMYOO5H1004C044240	미상	미상	남산타운아파트 지하주차장내	“해당내역없음”
37	2015- 미상323	KMYSA4AD8SCD00720?	미상	미상	황학동 난계로161 (중앙씨티빌)	“해당내역없음”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8호(1978.12.29)로 사업계획 결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8호(2009.12.24)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중구고시 제2015-66호(2015.8.13), 제2015-100호(2015.12.10)로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된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재생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 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가. 사업의 명칭 :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 나. 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85-3번지 일대
- 다. 시행면적 : 2,918.9㎡ (대지: 2,444.5㎡, 정비기반시설: 474.4㎡)
-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성 명 : SK디앤디주식회사 (대표이사 함스테판윤성)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ECO Hub
- 마.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 바. 건축계획
 - 건축면적 : 1,278.98㎡ (건폐율 52.32%)
 - 연 면 적 : 38,235.21㎡ (용적률 995.99%)
 - 층수(높이) : 지상28층/지하7층 (90m)
 - 주 용 도 : 업무시설
- 사. 공람내용 :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 아. 공람기간 : 2015.12.16. ~ 2015.12.30.
- 자.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02-3396-5774)
- 차.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서울특별시중구공고 제2015-876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2016년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6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1 신청대상

-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가 정년 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지급 유예한 자가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의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법 제25조의5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그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 된 이후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제외대상

1. 징계처분.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2 신청기간

정기 명예퇴직

구 분	신 청 기 간	명예퇴직일
6급 이상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 말일
7급 이하	매월 10일까지	해당월 말일

-  수시 명예퇴직 : 직제와 정원의 개폐, 질병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수시 신청 가능

3 신청절차

-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부서장은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소정의 신청서류와 함께 구청장(총무과)에게 제출

※ 인사위원회 심사는 매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월 말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다음달에 심사

4 지급기준

-  명예퇴직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

- ① 상위계급의 공무원
- ②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 ③ 해당계급 장기재직 공무원
- ④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5 지급대상자 결정

- 서울특별시중구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여부 결정
※ 소속부서장은 명예퇴직 제외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총무과에 통보
- 예산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

6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및 환수대상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정년잔여기간	산정기준
1년이상~5년이내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5년초과~10년이내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 × [60 + (정년잔여월수-60)/2]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60 + (정년잔여월수-60)/2]
10년초과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형법 제129조~제132조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형법 제355조~제356조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7

행정사항

-  소속 부서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작성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 추천하여서는 아니되며,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참조

신청서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신청자 명단

(부서명 :)

소속 (직위)	직급 (현직급임용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년 퇴직일	정년 잔여기간	근속기간		수당지급 예정액 (호봉)	퇴직당시 월봉급액
					정규	연금법상		

※ 전경력합산의 경우 연금법상 합산여부 반드시 확인

위 사실을 확인함.

2016. . .

확인자 직 성명 (인)

* 확인자는 소속부서장임

작 성 요 령

1. ②는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기재함
2. ③은 정확한 직급 기재
3. ⑧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공고된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4. ⑩은 해당란에 √ 표시함
5. ⑫는 공고된 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단위이하 잔여기간이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6. ⑧,⑨,⑩,⑪,⑫,⑬은 인사 또는 연금담당자가 직접 기재함
7. ⑬은 ⑪의 산출근거를 기재함
8. ⑭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하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신청서 3

명예퇴직대상자 요건심사서

대 상 자 인적사항	소 속 :	
	직 급 :	
	성 명 :	
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여부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해당여부를 기재하고 확인자 날인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자	"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간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기타 명예퇴직제도 취지상 부적격자	"
조사 및 확인자		
2016년 월 일		
부서(기관)명	직위 (소속부서장)	직급 성명 (인)

신청서 4

명 예 퇴 직 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201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신청서 5

퇴직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2015년 월 일부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근무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여 퇴직 후에도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16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	성명	(인)
서약집행자 : 소속	직	성명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신청서 6

명예퇴직자 확약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가 없음을 확약하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이후 퇴직일까지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 및 총무과에 신고하겠습니다.

- 가. 징계처분이 요구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지 않음
- 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음
-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에 있지 않음
- 라.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에 있지 않음
- 마. 국가 또는 다른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지 않음
- 바. 퇴직 후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로 예정되어있지 않음.

2016년 월 일

명예퇴직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특별승진 심사대상자인 경우 제출]

공 적 조 서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급 (직위)			
근속기간		담당업무			
가족사항					
학 력		공무원 경력		포상 및 징계기록	
년 월	이 력	년월일	이 력	년월일	내 용
공 적 요 지(100자 내외)					
조 사 자(소속부서장)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추 천 관 : ○○○○○○ 국장 인					

공 적 사 항	

관련법규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② 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績)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 가. 3급 이상: 2년 이상 나. 4급: 3년 이상 다. 5급: 4년 이상
 라. 6급: 3년 6개월 이상 마. 7급 및 8급 : 2년 이상 바. 9급: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시보임용 기간 및 제31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 해제, 휴직(「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 38조의4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 ②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 임용될 수 없으며, 근신·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 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 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 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줄일 수 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4.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④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22619호, 2011.1.10.>

제5조(명예퇴직수당·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제17조의3은 제외한다)의 월봉급액[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를 말한다]의 68.54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1.6]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제4조관련, 별표1)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 인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left[60 + \frac{\text{정년잔여월수}-60}{2}\right]$
3.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를 적용한다.